

경조금 지급 규정



2019. 11. 27.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경조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으로서 각종 경조사항의 발생 시 경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절차) 사무국장은 조합원의 경조사 신청 시 해당 경조금을 조속히 본인 또는 관계자에게 위원장 명의로 지급한다.

제3조(경조사항 및 경조금) 경조사는 경축사, 조의사로 구분하고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경축사

가. 본인결혼 : 10만원

나. 자녀결혼 : 10만원

다. 본인퇴직(정년· 명예·희망퇴직) : 금지환 3돈푼. 다만, 조합가입 3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1돈푼. 조합가입 3년 미만인 자는 미지급. (부처장 승진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 상실한 경우 금지환 2돈푼. 다만, 부처장 승진 이전에 조합을 자진 탈퇴한 자는 미지급) 다만, 금시세가 한 돈당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 돈당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지환을 지급한다.

2. 조의사

가. 본인사망 : 조화 및 50만원

나. 배우자사망 : 30만원

다.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및 자녀사망 : 10만원

라. 조부모사망(외조부모 포함) : 5만원

제4조(경조금 신청) 조합원은 경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경조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신청(경축사는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장례의식) 직원의 순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장례절차를 결정한다.

제6조(기타)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그 지급액 범위를 결정하여 부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4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 한 날(2002. 9. 1)로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 한 날(2007. 9. 11)로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 한 날(2009. 12. 17)로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8. 4. 12)로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9. 11. 27)로부터 시행한다.